

2002. 7. 1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

부가가치세법령

-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
 -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
 - 종전에는 ① 수출대금입금증명서, ② 수출신고필증, ③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
 - 2002. 7.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(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)로 일원화
 -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·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

-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 -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같은 세제지원 →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
 -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. 7.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화폐 매출액의 2%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(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)
 - 부가세 예정·확정신고시 전자화폐 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

전자화폐의 개념

- 전자적인 매체(컴퓨터, IC카드, Network 등)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 수단으로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

여신전문금융업법

-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
 - 벌칙내용 : 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」 → 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」으로 벌칙 강화
 -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
 -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
 -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
-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
 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 -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자
-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
 - 종전에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·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었으나,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

점을 감안하여

-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
-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
 -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(PG)가 소광물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

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및 포상금 지급

<고발방법>

-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
 - 보낼 곳 :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고발팀 (우편번호 100-743, 전화번호 02-3788-0755)
 - 고발시 포함할 내용
 - 고발인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전화번호)
 -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
 - 이용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(원본 또는 사본)를 함께 제출

<포상금 지급>

- 포상금 : 건당 10만원
- 지급시기 : 여신금융협회가 국제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
자료제공 및 문의 _____
 국제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
 E-mail : ho25400@nts.go.kr